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지점)

등록번호 : 128-82-14619

법인명(단체명) : 한국항공대학교

대표자 : 허희영

개업연월일 : 2013년 10월 26일 법인등록번호 : 120131-0000016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화전동)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용현동)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부동산업
 부동산업

종목 교육서비스업
임대
광고용건물임대

발급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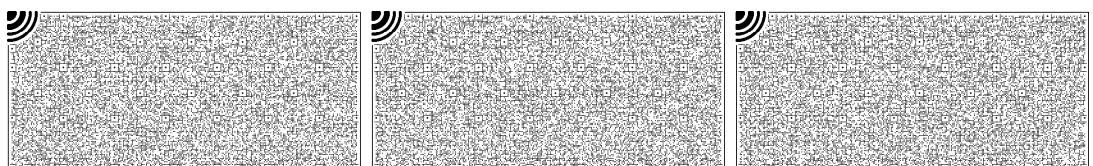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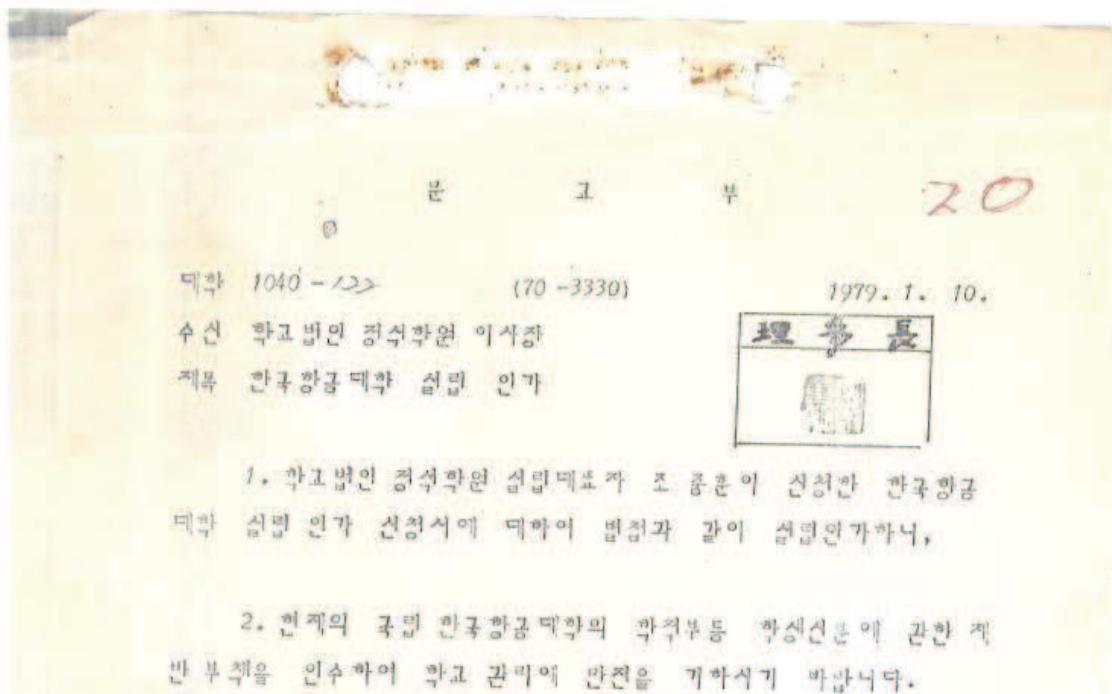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hangkongac1@hometax.go.kr

2022년 01월 14일

동고양세무서장





첨부 : 인가서 1부, 끝.



인 가 서

대학 1040-~~222~~

학교법인 경석학원

위 법인 설립 대표자 조종훈이 78. 12. 22. 서울한 한국항공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

1979년 1월 10일

문 고 부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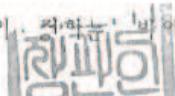
인 가 사 항

1. 학교의 설립 목적 :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일과학이 과 가사피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공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인적도 애화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익한 계도적 인재를 양성함.
2. 명칭 : 한국항공대학
3. 위치 : 경기도 고양군 선도면 화전리 200-1
4. 학칙 : 법정과 같음
5. 경비와 유지방법 : 학교법인 경석학원의 전입금과 학생의 납입금에 의함.
6. 제고년월일 : 79. 3. 1.
7. 주업년한 : 4년
8. 입학자격 : 고등법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9.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대학학생정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학 1040-1/22

①

학교법인 경석학원



10. 기타사항 : 학칙이, 제작이, 날짜에 의함.

11. 조건

가. 본 인가 시행 당시의 국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네자 제3학년 재학생은 경석학원이 유지 관리하는 사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해당학과의 재학생으로 각각 수용되어야 한다.

나. 본 인가 당체의 국립인 한국항공 대학에 재직중인 고객원은 본 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공 대학에 입용되어야 한다.

다.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 및 고원을 확보할 것.

라.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에 의한 수익을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이상 확보할 것.

마. 교육법과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과 당부의 행정 지시를 준수할 것.

바. 이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 인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밟힌 데에는 이 인가를 취소함. 끝.

인 가 서

대학 1040-222

학교법인 경석학원

위 법인 설립 대표자 조종훈이 78. 12. 22. 서울한 한국항공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

1979년 1월 10일

문 고 부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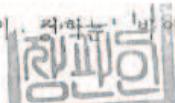
인 가 사 항

1. 학교의 설립 목적 :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일과학이 과 가사피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공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인적도 애화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익한 계도적 인재를 양성함.
2. 명칭 : 한국항공대학
3. 위치 : 경기도 고양군 선도면 화전리 200-1
4. 학칙 : 법정과 같음
5. 경비와 유지방법 : 학교법인 경석학원의 전입금과 학생의 납입금에 의함.
6. 제고년월일 : 79. 3. 1.
7. 주업년한 : 4년
8. 입학자격 : 고등법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9.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대학학생정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학 1040-1/22

①

학교법인 경석학원



10. 기타사항 : 학칙이, 졸업증에 의함.

11. 조건

가. 본 인가 시행 당시의 국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네자 제3학년 재학생은 경석학원이 유지 관리하는 사립 한국항공 대학의 제1학년 해당학과의 재학생으로 각각 수용되어야 한다.

나. 본 인가 당체의 국립한국항공대학에 재직중인 고객원은 본 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공대학에 입용되어야 한다.

다.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 및 고원을 확보할 것.

라.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에 의한 수익을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이상 확보할 것.

마. 교육법과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과 당부의 행정 지시를 준수할 것.

바. 이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 인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밟힌 데에는 이 인가를 취소함. 끝.